

【 2018.7.17(화) 강원일보 】

건설업계 합동 간담회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17일 오후
3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한국철

도시설공단·건
설업계 합동 간담회에 참석.

【 2018.7.17(화) 강원도민일보 】

경제인 동정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
장은 17일 오후3시 서울 건
설회관에서 열리는 철도시
설공단 건설업계 합동 간담
회에 참석한다.

‘工期연장’ 원도금액 증액 못받아도 하도금액은 늘려라?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입법예고한 하도급법 시행령과 향후 법 개정 방향을 보면 하도급대금 부담 삭감 결정 관련 윈스트라이크 아웃제 외에도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

공사기간 연장에 맞춰 원도금액이 증액되지 않았더라도 하도급사에 대금 증액 요청권을 부여한다거나, 신용평가 등급이 우수한 건설사까지 지급보증을 강제하는 등 규제 일변도 정책을 총동원해 건전한 하도급 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이날 입법예고한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서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면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뉴스포커스

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과도한 규제’ 논란

현행 규정에서 원사업자는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받았다. 이는 신용등급 및 대금결제 능력이 충분한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제사유를 축소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규제를 일괄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급보증 의무는 애초 일정 수준의 신용도를 갖추지 못한 업체, 중소기업 민간공사에서나 필요한 사항인데 애꿎은 우수신용 업체까지 다시

신용등급 우수 건설사까지 하도급 지급보증 강제키로 원도급사 98% 중소기업인 건설업체 상생 더 악화 우려

부담을 주려 한다”면서 “한쪽으로는 혁신 성장을 위해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꼴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또 공정위가 하반기 법률 개

정 방향으로 제시한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 방안도 원도급사의 일방적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원도급금액 증액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발주자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연장시 원도급사도 제대로 된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다수 민간공사는 물론, 공공공사에서조차 공기연장 간접비 등을 인정하지 않아 수많은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 모든 책임과 부담을 원도급사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부분의 민간 건설공사는 공기연장에 따른 원도급 대금 증액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원도급 증액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게 되면 원도급자 일방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업계 및 대다수 전문가들은 ‘원도급자=대기업’이란 인식에서 출발한 이번 하도급법 개정 방향은, 오히려 중소기업 간 거래를 위축시키고 ‘반목’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 2015년 기준 종합건설업체의 98.4%가 중소기업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도급자에 대한 일방적 규제는 대·중소기업 생태계를 더욱 교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권기자 skbong@

아하! 그렇구나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시공 의무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Q

건설업자가 제3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하게 하면서 자재, 장비를 제공하고 공사감독원을 상주시킨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자로부터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4항 본문), 구체적으로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 납품, 장비 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직접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 제1항).

위 조항을 참고해 볼 때, 직접시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노무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자재 납품 및 장비 투입 내역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회보험 및 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 등이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직접시공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 직접시공이란 수급인이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이른바 ‘직영시공’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국토해양부 건설산업과-99, '08. 5. 20).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①노임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 비치하고 개별근로자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며, 사회보

험 가입 등 직접 시공(인력 직접조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춘 경우 직접시공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② 자재 구입 또는 장비 임차만을 하면서 시공을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라면 직접시공에 해당하지 않고, ③공사에 대한 계획·관리·조정 업무만을 한 경우도 직접 시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2005. 4. 7. 선고 2004구합29061 판결은 건설업자 갑이 제3자인 을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재료와 설비를 조달하며 공사감독원을 파견한 경우 을이 갑의 실질적인 피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구조물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레미콘·철근과 관로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고강도 이중벽관을 갑이 공급한 사실, 갑 소속의 공사감독원이 을의 각 공사현장에 상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을이 갑에 종속된 실질적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하도급계약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유권해석 및 하급심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건설업자가 제3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하게 하면서 자재, 장비를 제공하고 공사감독원을 상주시킨 사정만으로는 건설업자가 자신의 인력을 사용하여 공사를 ‘직영시공’ 함으로써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영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